

## 05\_공동저작물 보호 조건 10분 요약

### #1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다양한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누군가 와 함께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2

#### ※ 공동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각 개별적인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저작물의 각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작품으로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으로 창작된 작품의 저작자들 간의 협력과 공동창작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 개별적인 기여가 분리되지 않고 작품 전제로서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공동저작물의 특징입니다.

### #3

#### ※ 결합저작물

가요는 일반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지만, 작사 없이 작곡만 있는 음악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가사가 없는 음악으로 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악이 없더라도 가사를 낭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 자체로 시와 같은 어문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작곡과 작사는 함께 작업하여 한 곡을 완성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분리하여 각각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4

### ※ 공동저작물

반대로 만화는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협력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입니다. 스토리작가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대사를 작성하고, 그림작가는 그림을 그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만화는 스토리와 그림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완성되는데, 단순히 스토리만 있는 경우나 그림만 나열된 경우에는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화는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의 공동 창작물로서 그들의 기여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 #5

####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모든 공동저작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전문). 그러나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신의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공동저작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 #6

####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원칙

#####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7

#### ※ 공동저작자 1인이 공동저작물을 동의없이 행사한 경우

공동저작물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행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공동저작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8

##### ※ 공동저작자 중 1인이 타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의 판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9

##### ※ 실무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실제로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즉각적으로 한다면 공동저작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체적인 경위를 따져 저작물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의 정도와 피해를 입은 공동저작자의 권리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 #10

#### ※ 일반적인 저작물 보호기간 및 침해 시의 조치 방법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입니다. 다만, 저작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업무상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에는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형사적 조치로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조치를 취하려면 침해를 당한 저작자가 침해 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시 조치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1

이어서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저작권 법」이 보호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 데요.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창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2

##### ※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지식재산 기본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룹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지적창작물은 기존의 법규로는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3

※ 신지식재산권 분류 - 산업저작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새로운 보호 객체의 제작이나 투자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 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첨단산업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대상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14

※ 신지식재산권 분류 - 정보재산권/기타

정보재산권	정보산업 발전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	기타 유형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 프렌차이징, 퍼블리시티권, 지리적 표시, 인터넷 도메인네임, 새로운 상표(색채 상표, 입체 상표, 소리, 냄새 상표 등)

#15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와 구제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6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초상사용권'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들은 자신의 얼굴, 이름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키고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